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 아동의 기준 : 만 18세 미만을 뜻함(고등학생도 포함)
-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자가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

#### ①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②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

#### ③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④ 방임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

제17조 금지행위	제71조 벌칙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1의2호)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2호)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2조)	

**\* 처벌법상 처벌 규정**

내용	처벌
<b>[제4조]</b> (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①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1항) ②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제5조]</b>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제6조]</b> (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제7조]</b>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해당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2항
- 해당 직군 :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당
- 신고의무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처벌법 제 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3)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포용 국가 아동 정책 발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4) 아동학대 대응체계 역할**



- 신고된 현장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
- 현장 조사 이행력 강화 : 불응·방해한 과태료 상향 조정(5백만원->1천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에서 심층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례관리 강화  
->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 방지

## (5)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 위기 아동 조기발견 노력

### 1) 학교

- 예비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 점검 및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 실시
-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 가정방문 실시

### 2) 지자체

- 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점검
-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점검
-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점검
- 어린이집, 유치원 출결 점검

## 2.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 (1) 아동학대 유형

#### 1)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손, 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포함

###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체학대가 중상해나 살해·치사에 이르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5조

\* 아동학대 의심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 수 있음

## 2)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의 예시			정서학대의 예시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집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정서적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음

## 3) 성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추행하는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2

- 성 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음

## 4) 방임,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방임 가장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알 수 있음

#### 4.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1)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 \* 신고시 알릴 정보

- ①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② 아동학대 의심사항
- ③ 피해아동 인적사항
- ④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사항
- ⑤ 신고자 관련사항
- ⑥ 아동학대 발생여부
  - 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 아동학대 발생빈도
  - 아동학대의 지속성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⑦ 기타사항
  -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아동)
  - 학대행위 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 타 기관과의 연계여부

###### \* 신고자는 최대한 알고 있는 많은 정보 제공

- \* 신고 방법 : 경찰(112),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아이지킴콜 어플리케이션  
익명신고 가능(문자로도 가능)

##### (2) 아동학대 신고시 주의사항

- 가능하면 증거사진 확보하기
-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 진술 오염 방지 위해 학대상황 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
-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3)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기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파악하기
- 아동의 분위기 변화 파악하기
- 아동의 말 경청하기&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하기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 (4) 신고 이후 협조사항

- 조사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적극 협조를 유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유지 필요

##### (5) 피해아동 보호절차

① 현장출동



- ② 아동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증거 수집
- ③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 ④ 아동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후 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분리보호 등 적절한 조치  
학대가 심할 경우 고소, 고발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
- ⑤ 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
  -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프로그램 시행
- ⑥ 학대행위자 재학대 방지
  -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례점검을 시행하여 종결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종결을 하게 됨
-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의 안전점검&상담교육 실시, 심리검사 심리치료 지원
  - 병원진료와 입원 등 의료적 자원 연계&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6) 신고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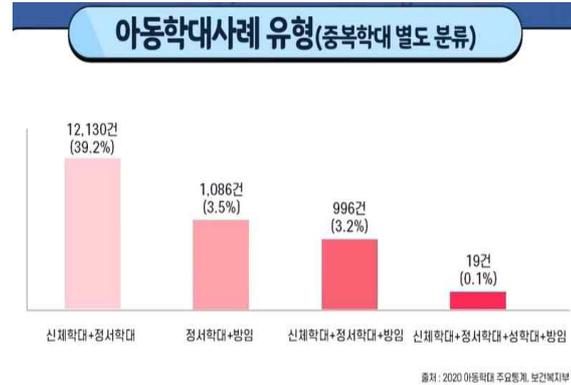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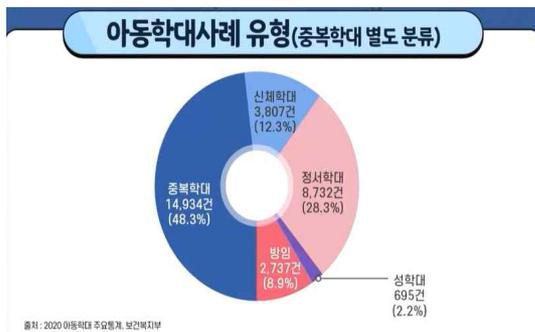
- ① 신고자의 신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62조의 2에 의해 보장
-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보도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③ 신고자를 신고 이유로 파면, 해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④ 신고자를 신고 이유로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등 불이익을 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⑤ 신고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
- ⑥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5.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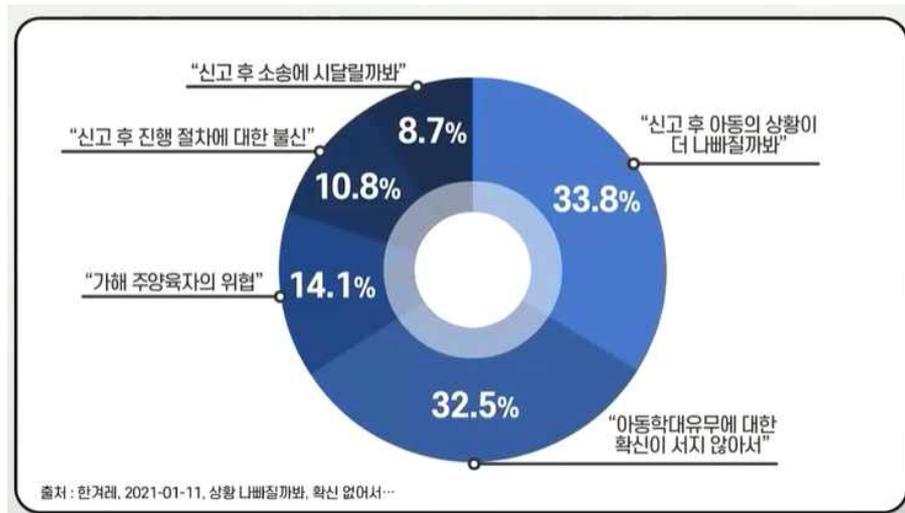
### (2) 아동학대 현황



### (3) 아동학대발생장소

가정이 약 87%를 차지

### (4) 아동학대 신고무자가 신고 망설임 이유



### (5)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